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4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31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욱준)

- 가. 제안이유
 - “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출연대상: (재)영등포문화재단
 - 관련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 - 사업내용
 -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
 - 영등포구민회관 및 문화예술시설 관리·운영

- 문화예술콘텐츠 기획 및 운영, 활성화
- 출연 필요성
 -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노후 무대 장비(조명콘솔, 빔프로젝터) 교체로 안전한 공연 운영 및 양질의 공연서비스 제공
-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 -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노후 무대 장비 교체 : 190,200천원
 - 조명 콘솔 구입 및 설치: 90,200천원
 - 빔 프로젝터 구입 및 설치: 100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(재)영등포문화재단(이하 “문화재단”이라 한다) 출연사업(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노후 무대 장비 교체)에 관한 추가 출연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 - 검토 결과
 - 출연사업의 세부내역은 ▲조명 콘솔 ▲빔프로젝터 구입이 있음. 「내용연수」(시행.2022.1.1.)를 참고하면 비디오프로젝터(구입년도: 2008)는 8년의 내용연수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장비 교체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겠으며, 현재 조명 콘솔(구입연도: 2017년)은 기관 내 1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용을 구입하는 것임.
 - 한편,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은 주민들에게 공연예술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써 노후화된 무대장비는 공연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에 양질의 작품을 제공하기 위한 해당 사업의 재단 출연에는 공감하는 바임.
 - 아울러,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음. 다만, 본 안건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기에 추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해야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35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6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“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(시설의 관리·운영)

다. 사업내용

-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
- 영등포구민회관 및 문화예술시설 관리·운영
- 문화예술콘텐츠 기획 및 운영, 활성화

라. 출연 필요성

-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노후 무대 장비(조명콘솔, 빔프로젝터) 교체로 안전한 공연 운영 및 양질의 공연서비스 제공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노후 무대 장비 교체 : 190,200천원
- 조명 콘솔 구입 및 설치: 90,200천원
- 빔 프로젝터 구입 및 설치: 100,000천원

※ 2024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24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라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
-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직접 관리·운영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·배치한다.
-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공연, 전시, 문화강좌, 학술,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며, 구청장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, 선정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